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용자 제도 안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용자대상

※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받고 복직전인 근로자는 재직근로자로 판단함

용자 종류	대 상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월평균소득 246만원('18년기준) 이하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소득 172만원('18년기준) 이하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임금이 감소한 용자대상 월 소득 172만원('18년기준) 이하인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가동 중인(휴업을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배우자 합산) 4,420만원('18년기준) 이하 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용자요건 및 한도액

용자종류	용자요건	신청기한	한도액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된 후 요양시설이용에 든 비용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 부터 1년 이내	1,000만원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1,250만원
장례비	①근로자 본인, ②배우자, ③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1,000만원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진단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	부모(또는 조부모) 1명당 연 500만원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임금감소 생계비	소속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1. 용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일 것 2. 경영상 이유로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용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3. 용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72만원 이하일 것	사유 진행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1,000만원 (감소임금범위)
소액생계비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1. 용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 2. 용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3. 임금이 감소한 용자대상 월 소득이 172만원 이하일 것	대상자가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00만원
임금체불 생계비	가동중(휴업포함)인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 용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420만원 이하인 근로자	이미 발생된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1,000만원 (체불임금범위)
※ 2종류 이상 용자신청 시 1인당 총 용자 한도 2,000만원 이내			

용자상환조건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연체,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 외국인 · 재외동포 지원 불가

금리	상환기간	보증방법
연 2.5%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 임금체불생계비 1.0%, 그 외 0.9% 본인 부담)

※ 2018년 말까지 기업은행에서 신용보증료 50%지원(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및 안내

신청	❖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56개소),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 ※ 근로복지서비스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안내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절차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예비선정 ▶ 서류제출(예비선정자에 한함) ▶ 용자대상 결정 ▶ 보증서 발행 ▶ 대출실행(결정일부터 15일 이내)
대출	중소기업은행(www.ibk.co.kr) ▶ 개인뱅킹 ▶ 대출메뉴 ▶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 ▶ 조회(보증서내역) ▶ 대출신청(약정동의) ※ 기업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은행방문 후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필요 ※ 스마트폰(모바일앱, 중소기업은행 i-ONE뱅크) 대출 가능



콜센터
1588-0075



자세한 안내 및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우리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http://www.kcomwel.or.kr)
고객소통마당 내 Help-Line(헬프라인) 또는 사이버 감사실